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18. 12.

특 허 청
(특허심사제도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안자 추가·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순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·정정 범위 확대(안 제7조)

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(안 제9조)

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 까지 추가”를 “추가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(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·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고안자의 추가 등) ① 실용 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 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 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<u>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 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 는 정정할 수 있다. 다만, 고안 자의 기재가 누락(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임 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 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 용신안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고 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	<p>제7조(고안자의 추가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추가</u>----- -----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다만, 제2호에 따른</u> <u>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고안자의</u> <u>기재가 누락(실용신안등록출원</u> <u>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</u> <u>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</u></p>

③ (생략)

제9조(심사의 순위) ①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

가.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

나.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

2. 특허청장이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8조제

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·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심사의 순위) ① -----

-----.

② -----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.

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
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
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
우: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
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
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
사 순위

③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
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
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
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<삭 제>